

급 수		분 류 번 호
6급 (복합호수자)	1항	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 119, 120, 121, 122, 125, 126, 127, 129, 130, 131
	2항	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 52, 53, 54, 57, 58, 59, 60, 64, 65, 67, 69, 70, 74, 75, 88
비 고		다만, 분류번호 503, 504,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.

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7월 6일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청
- 다. 회부일자 : 93년 7월 7일
- 라. 상정일자 : 93년 7월 21일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원 태 회)

가. 제안이유

- 조직의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,
- 파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,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.
-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제95조, 동법시행령 제113조

나. 주요물자

- 정수물품 중점 관리분야
 - 정수대상 물품 : 237개품목
 - 업무용 정수 : 44개 품목
 - 사업용 정수 : 193개 품목
- 승인요청 내역
 - 정수승인 물품 : 3개품목 6개
 - 신 규 취 득 : 3개품목 6개
 - 업무용정수 : 2개품목 4개
 - 사업용정수 : 1개품목 2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업무추진상 필요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'93정수물품취득승인(안)

의안번호	180
의 결	제21회
년 월 일	(93. 7. 23)

제출년월일 ; 93. 7. 6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제안사유

- 조직의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,
- 파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,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.

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95조, 동법시행령 제113조 (별첨)

정수물품 중점 관리분야

- ☐ 정수대상 물품 ————— 237개 품목
- 업무용 정수 ————— 44개 품목
- 사업용 정수 ————— 193개 품목

□ 물품의 구분

- 업무용 정수 - 조식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(예 : 무선장비세트, 다기능사무기기, 문서세단기, 텔레비전 등)
- 사업용 정수 - 청소, 도로보수, 보건, 환경, 시험 검사 등 주로 특정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(예 : 예취기, 노면절삭기, X선진단기, 멸균기 등)

승인요청내역

- 정수승인 물품 _____ 3개품목 6개
- 신규취득 _____ 3개품목 6개
 - 업무용정수 _____ 2개품목 4개
 - 사업용정수 _____ 1개품목 2개

주요내용

-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권 제작방법 개선 전산화 계획
- 공해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사무 전산화 추진계획
- 공원과 녹지대 제초작업 및 조림지 유지관리
- 별관 하절기 냉방용 장비확보 (위생과)

지방재정법

제95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113조【물품관리기준의설정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, 정수의 책정 및 배정, 내용기간·대체성·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,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.

'93년도정수발취비승인여청

(단위: 천원)

1. 총괄내역

구	과	승인요청		승인		승인	
		품목/수량	금액	품목/승인	금액	품목/승인	금액
계		3 / 6	5,900				
신규취득		3 / 6	5,900				
대체취득		•	•				
업무용정수		2 / 4	5,200				
신규취득		2 / 4	5,200				
대체취득		•	•				
사업용정수		1 / 2	700				
신규취득		1 / 2	700				
대체취득		•	•				

업무용정수

2. 신규취득

(단위 : 원)

구분 품목명	설비구입		승 인					청		취득 사유	승 인		불승인		비 고
	실수	부족	기		준		수량	단 가	금 액	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계	6		6	2	4	4			5,200						
다 기 능 사무기기	4		4	2	2	2		2,000	4,000						
	1	1	2	1	1	1		2,000	2,000	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권 제작방법 개선 전산화 계획 (시립예술단의 각 종 연주회 때마다 입장권을 제작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과다한 비용이 지 출되므로 입장권을 쉽고 저렴하게 제 작하고 효율적인 예술단원 및 회원 관리를 병행 추진 코자 함)					○ 시장내부결재 (제작비용 비교) ○ 현행 — 인쇄비: 40원 × 5,000매 × 30회 × 1년 = 6,000천원 ○ 컴퓨터제작시 — 용지대: 85원 × 5,000매 × 30회 × 1년 = 1,275천원 ○ 연간 4,725천원 절감효과

2. 신규취득

(단위 : 천원)

구분 품목별	별과경수		승 인						요 정		청		승 인		불승인		비 고
	실수	부족	부서별	기 준			수 량	단 가	금 액	취 득 사 유	수 량	금역	수 량	금역			
				정수	실수	부족											
다 기 능 사무 기기	1	1	오 정 구 (환경 위생과)	2	1	1	1	2,000	2,000	2,000	공해배출업소 민원 처리관련사무전산화 추진계획(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전 산화하는 것으로 환 경청가 개발한 프로 그램에 전수조사에 의한 자료를 입력하 여 배출업소관리를 구축한 후 환경청, 지방환경청, 시, 도 를 연결하는 전산망 을 구축하여 개별 배출업소 현황과 관 련 통계를 갱신, 조 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 사무를 자동화 하여 업무의 편의성 과 신뢰성을 제고)				경기 환경 01275-1270 (93. 5. 7) 배출업소 전산망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지침 시달 경기 환경 01275-988 (93. 4. 13)배출업소 전산망구축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 O실수 : 1대 (과 업무추진용)		

(단위 : 천원)

2. 신규취득

구분 품목명	예산구분		승 인 요 청							승 인		불승인		비 고		
	실수	부족	부서별	기 준			수량	단 가	금 액	취 득 사 유	수량	금액	수량		금액	
				정수	실수	부족										
에 어 컨디셔너	2		소계	2	•	2	2	600	1,200							○규격 : 창문형 1.5R/T ○사무실 : 34.9평
	2		위생과	2	•	2	2	600	1,200	하절기 냉방용						

사업용정수

2. 신규취득

(단위 : 천원)

구분 품목별	신청수량		승 인						청		승 인		불승인	비 고					
	실수	부족	부서별	기			수	량	단	가	금	액			취 득 사 유	수	량	금	액
				정수	실수	준													
예취기	제	2		2	•	2	2	2				700							
		2	소계	2	•		2	2		350		700							
	• 2	오정구 (건설과)		2	•	2	2	2		350		700	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 및 조림 지 유지관리					○공원 및 녹지대 현황 (장소) -원종동 358번지 원종 어린이공원 외 8개소 (공원) -삼정동 186-7번지 외 8개소(녹지대) (면적) -공 원 : 20,470㎡ -녹지대 : 32,359㎡ ○조림지 현황 -장소:여월동 신31-1 번지 외 10개소 -면적:14.4ha	